

의안 번호	1806	<b>[울산광역시 중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</b> <b>심사보고서</b>
----------	------	---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8. 20.(금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8. 20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9. 6.(월)

### 2. 제안설명 요지(주민자치국장 이상찬)

#### 가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용자 중심의 제도개선 요청에 따라 사용료 반환기간 규정을 신설하고,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식 표현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용자 중심의 제도개선 요청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간 규정 신설(안 제8조)
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

#### 다. 근거법규

-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(2020-250호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미경)

-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용자 중심의 제도개선 요청에 따라 사용료 반환 기간 규정을 신설하고,
-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본어식 표현 등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애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 근 거 법 규

###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(2020-250호)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반국민 대상으로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는 공공 체육·관광·휴양시설인 체육관, 운동장, 휴양림, 캠핑장, 펜션 등에서 이용일 전 예약 취소 시 총액의 50 ~ 100%의 과도한 위약금을 받고 제대로 환불해 주지 않고 있어,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하도록 권고

- 반환사유 발생 시 3일 또는 5일 이내 즉시 반환 조치하여 회계처리 기준 정립